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334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9.

발의자 : 김미애 · 송언석 · 서병수
이채익 · 이종성 · 김도읍
성일종 · 이 용 · 장동혁
지성호 · 한무경 · 양금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 청구 대행단체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.

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가 국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,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보고 · 질문 시에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의료급여기관,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4항 신설).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·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보고 및 검사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2조(보고 및 검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·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u>
<u>④ · ⑤ (생 략)</u>	